

벤처기업의 대학교수에 대한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취소 분쟁 - 신라젠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9. 9. 4. 선고 2019나200396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6가합109032 판결



신라젠에서 항암신약 펙사벡(Pexa-Vec) 연구개발에 기여한 대학교수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취소한 사건은 대법원까지 모두 대학교수가 승소하였습니다. 이제 사건 종결되었으므로 참고로 판결요지를 소개하고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원고 대학교수는 2006년 신라젠을 설립하고 2008년 4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부산의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후 산학협력단과 신라젠은 대학교수를 책임자로 하는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신라젠의 최고기술책임자(CTO)라는 명칭으로 활동

하였습니다. 회사는 그 기간 중인 2012. 4. 15. 주식 50만주, 행사가격 10억원의 스톡옵션 부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분쟁이 발생하여 회사는 2016. 1. 6. 이사회에서 위 스톡옵션 부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여러 쟁점 중에서 벤처기업에서 대학교수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에 관한 특별한 쟁점을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벤처기업의 임직원은 물론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 대학, 연구기관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 규정한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이하 '특별 부여대상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위 각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사유는 동일한데, 그 취소사유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제1호),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제2호), 회사의 파산 등(제3호),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제4호)로 규정되어 있다(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9항).

벤처기업법 조항 - 임직원이 아닌 외부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의 취소사유 해석

나아가 위 법령상 취소사유 제1호는 그 문언 해석상 회사의 정식 임직원 지위에서 이를 부여받은 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대학의 교원 지위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원고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고, 달리 보더라도 그와 대가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위 자문계약이 중도 해지 없이 약정기간의 만료로 종료한 이상 그 후 다시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와 분쟁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위 법령상 취소사유 제2 내지 4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취소사유 제1호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 구체적인 논거는 아래

계약서 취소사유 제8조 제1항이 '임원이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를 취소사유로 들고 있다고 해도 위 문언은 피고 임직원이 아닌 자들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정형적 문구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⁹⁾ 정형적으로 기재된 위 취소사유의 문언을 이유로 위 신고를 통해 표출, 확인되는 계약 내용과 달리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벤처기업법 및 그 시행령이 회사 임직원 아닌 특별 부여대상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규정하면서도 그 취소사유에는 신분의 구분 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제1호)라는 상법 시행령의 규정을 만연히 준용하고 있으나, 그 부여 대상자와 사이의 관련 계약관계의 종료 내지 중단 등의 사유를 들어 위 시행령 제4호의 취소사유(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취소사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별론, 위 제1호의 사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¹⁰⁾

상법과 벤처기업법 조항 해석의 구별 - 벤처기업의 경우 임직원이 아닌 외부자에게 부여

한 스톡옵션에 대해 상법과 동일한 해석 불가

라) 피고가 그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는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6항은 상법과 동일하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2년 이상 재임, 재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한 (임직원 아닌) 특별 부여대상자에게도 신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한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의 취지 및 '재임, 재직'의 문언에 비추어 위 요건의 적용은 회사 임직원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와 달리 본다 하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요건과 취소요건은 별개의 것으로, 앞서 본 것처럼 취소사유의 경우 특별 부여대상자와 사이의 관련 계약관계 중단 혹은 종료 등 사유(제4호)를 별도 약정에 따라 취소사유로 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이상 이러한 경우까지 문언적 해석의 범위를 넘어 사임, 사직의 취소사유(제1호)로 포섭하여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위 행사요건의 규정을 근거로 '자문계약 해지' 역시 '사임 또는 사직'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필요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¹⁷⁾

스톡옵션, 회사소송, 기술법무, 계약분쟁, 손해배상, Claim, License, R&D 제휴계약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